[별지 제7호의4서식]

장외장치장·장외작업장 등록(변경) 신청서

처리기간
3 일

신청번호 :

신청인	① 보세공장명		② 보세구역부호	
	③ 주 소			
	④ 대표자 성명		⑤ 사업자등록번호	
신청내용	⑥ 작업장 종류	□ 장외작업장	□장외장치장	
	⑦ 등록부호			
	⑧ 면 적			
	⑨ 사업자등록번호			
	⑩ 대표자성명			
	⑪ 전화번호			
	⑫ 사업장주소			
⑬ 세관기재사항				

「관세법」 제187조 및 「보세공장운영에관한 고시」제17조의2,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보세공장외 장치장·작업장 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세 관 장 귀 하

위와 같이 승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첨부서류		
	신청인 제출서류	1. 신청 장치장·작업장에 대한 설명자료(도면 포함)
	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※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